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72

발의연월일: 2025. 3. 10.

발 의 자:신영대·최기상·정태호

정성호 • 박홍배 • 홍기원

전재수 · 이해민 · 김정호

윤준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0년 새 혼인 건수는 약 40% 감소함. 통계청 2024년 12월 인 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 2,422건으로 10년 전인 2014년 30만 5,500건보다 37% 감소한 수치임.

최근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결혼 5년 차 이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평균 결혼 비용은 3억 47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웨딩업계에서는 예식장 대관, 식대 등의 비용이 대폭 인상됨.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발표한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균 예식장 대관 비용은 1,401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9% 증가함.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을 뜻하는 일명 '스드메'비용도 작년보다 22.5% 급증함.

혼인율 제고로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상황이지만, 결혼 비용이 계속

해서 증가하고 있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부담이 심각한 상황임. 하지만, 혼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하여 국민들에게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52조 및 제59조의4제9항).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제1항·제4항·제5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1항·제4항·제5항 및 제8항"을 "제1항·제4항·제5항·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⑧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혼인한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5백만원을 공제 한다.

제59조의4제9항제1호 중 "제52조제8항"을 "제52조제9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혼인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혼인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⑦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⑦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⑧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
	는 그 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근로소
	득금액(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
	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말한
	다)에서 5백만원을 공제한다.
<u>⑧</u> 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⑨ 제1항·제4항·제5항 및 제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	<u> 8항</u>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	
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	
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	
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	
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u>⑨</u> (생 략)	<u>⑩</u> (현행 제9항과 같음)
<u>⑩</u> 제1항·제4항·제5항 및 제	<u> </u>
8항에 따른 공제를 "특별소득	항 및 제9항
공제"라 한다.	
① (생 략)	① (현행 제11항과 같음)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	9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	
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	
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1
제6항, <u>제52조제8항</u> 및 「조	<u>제52조제9항</u>
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	
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	
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⑩・⑪(생 략)	①·① (현행과 같음)